

프로세스명	규정 · 지침 > 경영관리 > 감사 > 공정거래 실천 지침 (IA1103, R8)		
담당자	이태현	담당부서	사업관리그룹
시행일	2024-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제반 법규를 말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 “자율준수 관리자”란 CP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자율준수 협의회”란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별표 1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를 말한다.
- “CP 주관부서”란 자율준수 관리자를 보좌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자율준수 관리자

제3조(자율준수 관리자의 선임)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 관리자는 CP 운영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
- 자료와 정보의 제출 요구, 출석과 진술 요구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
- 법 위반 예방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 요구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5조(자율준수 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 관리자는 CP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CP 운영계획 수립과 개선 활동
- CP 운영과 활동 성과 평가
-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자율준수 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회사의 지원) ①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자율준수 협의회

제8조(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 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의 직을 맡는다.

②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 유관업무 수행 부서장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CP 주관 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 협의회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④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자율준수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의 기본방침 설정 등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와 자문
3.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간 업무 조정
4.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과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제4장 공정거래 실천

제10조(공정거래 실천리더 선임 및 역할)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일반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직원 중에서 각 그룹장 또는 사업부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선정한다.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CP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부서별 전담요원으로서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 활동 총괄
2. 담당 부서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지도
3. CP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발굴, 건의
4.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확산 활동
5.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제11조(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의무)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하여 일상업무 수행 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율점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CP 주관 부서의 상담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실행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CP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5장 CP의 운영

제12조(CP 운영) ①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연간 CP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② CP주관부서는 CP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 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별표 1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며, 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 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의 변화에 따라 매년 분기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14조(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영업업무 수행자, 프로젝트 관리자, 재무 및 구매업무 수행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되,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 1. e-러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 3. 기타 사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강연회 등
- ④ CP 주관부서는 교육효과 측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상담실 운영)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에 대응할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상담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 예는 신분, 상담, 신고 사실을 사내외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법 위반행위 감시)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직무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을 받는 부서는 CP 주관부서의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모범 직원에 대한 포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 고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별표 1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성과 평가) ①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매년 반기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CP운영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② CP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매년 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성과 평가 시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는 임직원이 활용하기 쉽도록 적절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보관되어야 한다.
② CP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ECM에 공정거래 문서함을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지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침의 공표) 이 지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지침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 실천 지침 [별표 1] 자율준수 편람(제2조 5호, 제13조 1항 및 제17조 2항 관련) *세부내용 별첨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10.02.09	포스콘과 포스데이타 회사 통합에 따른 제정			CEO
1	2019.07.03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하고 업무여건 변화를 반영함	한호태		김시완
2	2019.12.02	프로세스형 규정·지침의 법률형 전환에 따른 번호체계 변경	한호태	한호태	김시완
3	2022.05.10	자율준수 편람 추가(별표1)	이태현	이문기	김경식
4	2022.09.30	사규 변경에 따른 직책 명칭 변경 및 자율준수편람 개정(별표1)	이태현	이문기	김경식
5	2023.03.20	회사명 변경에 따른 사규 일괄 개정	이태현	-	허종열
6	2023.04.20	자율준수 편람 개정(별표1)	이태현	하헌길	허종열
7	2023.11.10	자율준수 편람 개정 주기 명료화와 최근 법규 개정 사항 반영한 자율준수 편람 개정(별표 1)	이태현	하헌길	허종열
8	2024.05.27	최근 법규 개정사항 반영한 자율준수 편람 개정(별표 1)	이태현	하헌길	허종열

별첨문서	IA1103-1 [별표1] 자율준수 편람 (pdf_2564KB) .html
------	---